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3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정준호·이재관·서미화

윤후덕 • 김한규 • 박희승

민병덕 · 윤종군 · 민형배

이연희 · 김성환 · 서삼석

임미애 • 박정현 • 양부남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 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K-패스 도입 등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 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고,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 하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눌 필요가 제기됨.

한편,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

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경우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.

이와 같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 스를 '공익서비스'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 함.

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,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2호, 제22조제7항,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4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"공익서비스"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.

제22조제7항 중 "도시철도차량"을 "도시철도차량 또는 도시철도시설"로 한다.

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) 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(이하 "공익서비스비용"이라 한다)을 「교통시설특별회계법」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체계 관리계정에서 지원하다.
 - ②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과 환급액
 - 2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

제31조의3(공익서비스비용 산정·평가심의위원회)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 산정·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감면액 등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"공익서비스"란 도시철도운
	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
	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
	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
	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
	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.
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① ~ ⑥	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	(7)
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	
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	
노후화된 <u>도시철도차량</u> 을 교체	도시철도차량
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	또는 도시철도시설
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제31조의2(공익서비스 비용의 부
	<u>담) 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자</u>
	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
	생하는 비용(이하 "공익서비스
	비용"이라 한다)을 「교통시설

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교통시설

 특별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

 에서 지원한다.

- ②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 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 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 액과 환급액
- 2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 련된 비용

제31조의3(공익서비스비용 산정 ·평가심의위원회)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익서비스비용 산정・평가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면액 등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 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